

광주지방법원 2024. 10. 16 선고 2022가단538024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전 문

원고A조합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

담당변호사 유승호

피고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찬

변론 종결2024. 8. 21.

판결 선고2024. 10. 16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,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, 2 부동산에 관하여 2017. 11. 27. 체결된 증여계약,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, 4 부동산에 관하여 2017. 11. 27.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68,461,4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, 2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. 11. 29. 접수 제204787호로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피고는 원고에게 68,461,4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

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5. 7. 24. 유한회사 D(이하 'D'이라고 한다) 소유인(차량번호 1 생략) 대형승합버스에 채권최고액 100,000,000원,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고, 2016. 12. 26. D에게 74,340,000원을 대출하였는데, 당시 D의 대표이사였던 C이 74,340,000원 한도로 연대보증을 하였다.

나. 또한 원고는 2015. 9. 25. D 소유인(차량번호 2 생략)와 (차량번호 3 생략) 각 대형승합버스(이하 위 가.항 버스 포함 3대를 통칭하여 '이 사건 각 버스'라고 한다)에 채권최고액 205,000,000원,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고, 2016. 12. 22. D에게 158,530,000원을 대출하였는데, 당시 위 C이 158,530,000원 한도로 연대보증을 하였다(이하 위 가.항 대여금 채권과 통칭하는 경우 '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'이라고 한다).

다. C은 2017. 11. 29.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2017. 11. 27.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(이하 '이 사건 처분행위'라고 한다).

라. D은 2019. 11.경 E에게 D 소유 전세버스 차량을 전부(운송사업권 포함) 양도하였고, 이 사건 각 버스의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위와 같은 양도에 따른 이 사건 각 버스의 소유자변경에 동의하였다.

마. 원고는 2020. 1. 8. 광주지방법원 F로 (차량번호 1 생략) 버스에 관하여, 광주지방법원 G로 (차량번호 2 생략)와 (차량번호 3 생략) 버스에 관하여 각 자동차임의경매신청(이하 '이 사건 각 경매신청'이라고 한다)을 하였으나 위 각 버스의 소재 파악이 불가하여 2020. 3. 11. 각 기각되었다.

바. 원고는 2020. 3. 12. D, C을 상대로 위 가., 나.항에 따른 대여금에 관한 지급명령(광주지방법원 2020차전181)을 신청하여 2020. 3. 23. 지급명령(이하 '이 사건 지급명령'이라고 한다)을

발령받았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(가지번호 포함), 을 제8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

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(민법 제406조 제2항),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'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'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,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.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,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.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,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(대법원 2023. 4. 13.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).

피고는, 원고가 2020. 1. 8. 이 사건 각 경매신청을 하면서, 혹은 2020. 3. 12.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하였을 것이므로 위와 같이 채권자인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22. 9. 13.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, 원고가 금융기관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경매신청을 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 사실 및 C의 사해의사를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.

3.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원고의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에 따른 C에 대한 각 연대보증금 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 성립 여부

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,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

확보되어 있다면,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,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,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한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그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·입증하여야 한다.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가 있는 후에 임의경매 등 절차에서 환가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부동산 가액의 하락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환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2다41589 판결).

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, 원고가 2016. 12. 22.과 2016. 12. 26. 2회에 걸쳐 D을 주채무자,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대출을 실행할 당시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함으로써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사실, C은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7. 11. 27.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보전하고자 하는 피보전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,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그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·입증하여야 한다.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버스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각 경매신청이 기각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버스에 대한 근저당권은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경매신청을 한 2020. 1. 8.경 이 사건 각 버스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들에 대한 담보가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,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처분행위로부터 2년여가 지난 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를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를

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(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이자 이 사건 각 경매신청 이전인 2019. 11.경 D이 E에게 D 소유 전세버스 차량 전부를 양도할 당시 원고가 별다른 이의 없이 위와 같은 양도에 따른 이 사건 각 버스의 소유자변경에 동의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).

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,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이상훈

별지